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(서울글로벌센터빌딩)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 안 번 호	3350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공유재산(서울글로벌센터빌딩) 현황

- 위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(서린동, 영풍문고 옆)
- 면적: 대지면적  $1,070 m^2$ , 연면적  $11,752 m^2$
- 목적: 국제기구 활동 지원
- 규모: 지하 4층, 지상 15층
- 재산관리관: 외국인이민담당관(건물), 주차계획과(토지)

### 나. (서울투자진흥재단) 공유재산 사용 현황

- 위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(서울글로벌센터빌딩 6·7층)
- 면적: 토지  $90.34 m^2$ , 건물  $991.59 m^2$
- 목적: (재)서울투자진흥재단(市출연기관)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(사무공간)
- 당사자: <허가부서> 외국인이민담당관 / <수허가자> (재)서울투자진흥재단
- 허가기간: 2025. 10월 ~ 2030. 9월(5년)
- 무상사용기간: 2026. 1월 ~ 2030. 9월(4년 9개월)

#### 다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요건에 해당됨.
- 「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규정한 “국제 기구” 중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,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#### ▶ 재단의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 고려시, 사용료 감면 타당

※ ‘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‘조건부 적정’ 의견을 득함.

- 심의일: ‘25. 9. 25.(목)
- 심의결과: 조건부 적정(재산관리과, ’25.10.10.)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출자·출연기관 등이 비영리사업을 할 때 지방 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 바람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2호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이재상 (☎ 2133-5078)